

#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7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13.

발 의 자 : 김진희, 백선아, 이영환,  
김영실, 김지훈, 장근환

## 1. 제안이유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필수적인 전문위원의 증원을 통해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 1인을 증원함(안 제5조제1항)
- 기존: 지방행정사무관(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포함) 2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
  - 변경: 지방행정사무관(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포함)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남양주시조례 제 호

##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2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 4.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5조(전문위원)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<u>1인</u> 으로 보한다.  ② (생   략)	제5조(전문위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인</u> -----.  ② (현행과 같음)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### 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김학철